

1. 개정이유

교통안전법 개정('22.1.28 시행)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 여부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함(안 별표9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OOOO. OO. OO. ~ OO. OO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00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00

대통령령 제 호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2호 표 부분을 개정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4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~ 마. (생략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 상
1.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1호	200만원		
2.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2호	300만원		
3.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3호	300만원		
4.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 진단을 받지 않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65조 제1항제2호	600만원		
5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4호	100만원		
6.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5호	100만원		
7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6호	300만원		

8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·검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7호	300만원		
9.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보관·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8호	100만원		
10.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9호	100만원		
11. 법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 제9호의2	500만원		
12. 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 제9호의3	50만원		
13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1항제3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14.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10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15.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 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	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2	100만원		
15의2.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1항제4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15의3. 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른 운행 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5조 제2항 제10호의2	300만원		
16.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11호	50만원		
17. 법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 방법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12호	100만원	300만원	500만원
18. 법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 제2항제13호	100만원		